



##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· 투명성 제고를 위한

## 공동운영·관리매뉴얼

2016, 2,

- 본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, 사업 추진 시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
- 관련규정이나 **개별사업의 특성**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조정 · 보완하여 적용 가능



대한민국 행복 열쇠



###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·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 · 관리 매뉴얼

# 목차

① 총 칙 0′
②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 03
③ 사업기획 05
④ 평가계획 수립 0'
⑤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09
⑥ 선정평가 1 <del>.</del>
7 결과발표 17
❸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19
⑨ 행정사항 2'

[붙임 1] 청렴교육내용(안)

[붙임 2] 보안서약서(양식)

[붙임 3] 외부면담 기록서(양식)

[붙임 4]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기준(안)

## 01총 칙

#### 목 적

O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**기본 절차를 제시**함으로써 사업을 **공정** 하고 투명하게 운영 · 관리

#### 관련규정

- O 각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및 훈령
- O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(137호)
- O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### 용어정의

- '대학재정지원사업'이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(기관)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모집 · 선정절차를 통해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
- O '사업신청기관(대학)'이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모집 · 선정절차에 응하는 기관(대학)
- O '**사업담당자'**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 · 관리하는 주체로서 교육부 및 위탁기관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자
- O '위탁기관'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
## 적용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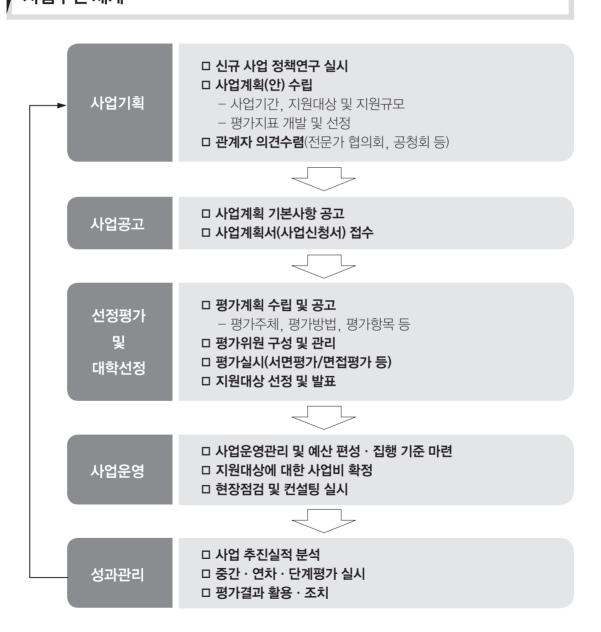
- O 교육부에서 총괄 · 집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
- O 세부조건
- (사업대상): 대학(기관) 및 사업단(팀)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
  - ※ 정부용역 및 그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 제외
- (경쟁체제): 다수의 사 업신청기관(대학) 중 공개 모집·선정절차를 통해 일부를 선정하는 사업
- (지원방법) :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
  - ※ 단. 집단연구과제(R&D)는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 적용을 제외

## 본 매뉴얼의 활용

- O 본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, 사업 추진 시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
- O 관련규정이나 **개별사업의 특성**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기준과 절차 를 조정 · 보완하여 적용 가능

## 02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

## 사업추진 체계



#### 운영주체별 역할

#### 교육부

-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
-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결정

사업위탁 🗸 🖒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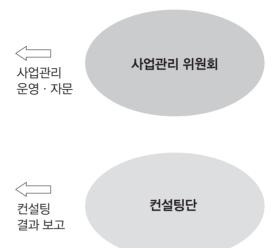
#### 위탁기관

- 사업관리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관리
-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
- 컨설팅단 운영 등

사업비 사업계획서 교부·관리 사업계획서 제출·실적보고

#### 대학(사업단)

-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
- 사업추진 및 관리 / 자체평가



#### 0 교육부

-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
- O 위탁기관(한국연구재단. (전문)대학교육협의회 등)
  - 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 **위탁**을 받아 **사업의 관리 · 운영 수행**
  -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, 대학 선정 및 성과 평가 시행,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

#### ○ 사업관리위원회

- 사업 관리 · 운영에 관한 **자문**.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최종 심의

#### ○ 대학 및 사업단

-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 추진, 성과평가 및 집행보고서 작성·제출

## 03 사업기획

## 사전연구 및 기획

O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(차기사업 포함)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의 목표,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정책연구 실시

### 의견수렴 절차

#### ○ 의견수렴 유형

- **공청회, 토론회, 전문가 간담회, 포럼, 설명회**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가능

#### ○ 의견수렴 대상

- 사업계획(안)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**다양한 제안 및 건의사항** 등을 반영하기 위해 **대학** 관계자, 연구기관, 정책연구팀,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가능
- 사업별 특성 및 의견수렴 목표에 따라 의견수렴 **대상 조정 가능**

#### ○ 의견수렴 시기 및 횟수

- 의견수렴 절차는 **사업계획(안) 확정 · 공고 전에 최소 2회 이상**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,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공고 전 **주요 의견수렴 결과**를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**공개**
- 기본계획/평가계획 작성이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, 이를 공개하고 설명회 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안내
- 단, 별도 선정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

#### 청렴교육

#### ○ 안내대상 및 방법

- **사업설명회** 진행시 설명회 내용에 **사업담당자** 및 **사업신청기관(대학)**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 상 **청렴의무사항을 반드시 안내** 

#### ○ 안내내용

- 안내내용에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상의 **부정청탁의 금지** 조항과 **사업관리규정상**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적발 시 선정취소 등의 **불이익**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'청탁·뇌물 대처방법'을 준용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, 본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표준 청렴교육 내용(안)을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응용 가능 ※ [붙임 1] 청렴교육내용(안)

## 사업공고 및 모집

#### ○ 공고사항

-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개요 · 사업기간 · 지원내용 · 선정규모 · 신청방법 · 평가방법 · 평가일정 · **의무사항(윤리규정)** 등을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

#### ○ 공고시기 및 모집기간

- 사업 기본계획 및 공고문은 신청서 접수시기(마감일 기준) 대비 최소 6주 전에 공고하여 사업신청기관(대학)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부여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공고 가능

## 04 평가계획수립

### 평가지표 개발

#### ○ 평가지표 개발절차

- 기존 유사사업에서 사용하던 선진지표 수집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 하여 평가지표 pool을 형성
- 평가지표 후보리스트를 작성한 뒤 각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지표 (안)을 작성
- 전문가, 대학관계자, 산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, 토론회 등 **의견수렴을 실시** 하여 **최종 평가지표를 확정**
- 단, 사업기획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지표 개발을 위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

#### ○ 평가지표 구성방법

- **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**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평가지표 구성
- **정량평가항목과 정성평가항목을 포함하되**, **핵심지표 위주**로 단순화하여 구성 ※ 단. 요건심사에서 정량적 자격을 요구할 경우. 서면평가에서 정량항목 생략 가능

### 평가방법

#### ○ 평가유형

- 위탁기관은 **서면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** 등의 형태로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평가유형을 선택하여 평가실시

#### ○ 평가단계

-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는 **'요건심사-서면평가-발표평가-최종심의'**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단계를 조정 및 생략 가능
- 서면평가는 보안이 유지된 별도의 평가장에서 평가자료에 대해 절대·상대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 활용 가능
- 발표 · 면접평가 시 **무작위로 샘플**을 선정하여 **평가과정을 기록(영상 · 음성 등)**할 수 있으며,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의 **감사직원 참관** 가능

#### 0기타

- 평가위원들이 사업신청서를 정밀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**평가시간 및 평가기간**을 **충분히 부여**하고, 발표 · 면접평가의 경우 질의 · 응답시간을 별도로 부여 가능
- 평가가 진행되기 전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지표,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의 전문성 · 객관성을 확보

## 05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

##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

#### ○ 평가위원 Pool

-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, 사업성과평가 등에 **공정성과 전문성**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위원 **후보단 구성**
- 평가위원은 **학문분야별 전문가, 대학관계자, 연구원, 산업계관계자** 등으로 구성 가능
- 평가위원 **후보자 정보**(인적사항, 전공, 논문실적, 평가 이력사항,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)는 위탁기관에서 관리
-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**보안조치** 별도 마련 가능

## 평가위원 자격

#### ○ (패널)평가위원장

- 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**이해도가 높은 자**로 위촉해야 하며, **해당 사업의 운영** 경험 및 평가경험 등 고려 가능

#### ◈ 평가위원장 제외대상(아래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)

- 본인 및 배우자 현 소속기관이 해당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인 경우
-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\*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
  - \* 교육부가 주관하는 컨설팅 또는 교육부 훈령·지침에 따라 대학(사업단)에서 수행한 자체평가의 내·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#### ◈ 평가위원장 제재

- 평가위원장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 배제 가능
-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
- ※ 배우자 현 소속기관 및 개별적 컨설팅 경험 여부는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

#### ○ 평가위원 자격

-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**전문성이 높으며, 공정한 평가**를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
- 해당분야의 전문가 여부는 해당분야 **실무경력이 10년 이상**인 사람, 해당분야 **학술**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, 대학의 해당분야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(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) 이상인 사람 등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

#### ○ 평가위원 제외대상

- 교육부 **전\*** · **현직 공무원** 및 **위탁기관의 직원**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되, 교육부 장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 가능
  - \* 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피평가기관과 **이해관계**가 있는 자(상피조건)

	필수조건	선택조건	
위탁기관 확인사항	- <b>본인 현 소속기관</b> 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	- 출신학교(최종학력)가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(대학)	
평가위원 확인사항	- <b>배우자 현 소속기관*</b> 이 동일 패널의 사업신청기관 (대학)	<ul> <li>친인척 · 사제지간 등 평가에 참여하기 부적절한 관계</li> <li>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관계</li> </ul>	

<sup>\*</sup> 정규직(전임교원, 행정직원 등) 외에 겸임·시간강사 등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포함

- ※ 선택조건은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
- ※ 평가위원 확인사항은 평가위원의 서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, 위반적발 시 점수 무효화 및 향후 평가배제
- **불성실 · 불공정**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
- 그 밖에 **평가**의 **공정성**을 **해할 염려**가 있는 전문가

#### ○ 기타 고려사항

- **상피조건**은 **패널단위로 적용**함을 원칙으로 함
- 평가위원 선정 시 **대학재정지원사업의 특성**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**제외 대상 일부를** 조정할 수 있음(선택조건)

### 평가위원 선정

#### ○ 선정기준

- 해당분야 전문성, 평가역량 및 경력, 평가윤리 및 태도 등 사업별로 사전에 **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**하고.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군에서 평가위원을 위촉

#### ○ 선정시기

- 원칙적으로 **평가 관련 워크숍 ·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기 전**까지 평가위원 선정을 완료해야 함
- 단, 평가위원의 이해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위원 선정 이후에도 평가에서 배제 가능

#### 평가위원 관리

#### ○ 불성실평가자 관리

부정청탁을 받아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결과발표 전 평가결과를 임의로 외부에
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평가위원은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학재정지원사업
 에서 평가위원 참여 배제 가능

## 06 선정평가

#### 평가준비

#### ○ 사전교육

- 선정평가 전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**사전 워크숍 · 오리엔테이션**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, 평가일정 등에 대해 안내
- 사전교육 시 **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의무, 이해관계 여부 조사 및 부정행위 발각 시 불이익 조치**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

#### ○ 보안서약서

- 사업담당자 · 평가위원 및 평가시스템 관리자에게 평가결과 비밀유지 등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보안의식을 강화하고, 징구된 보안서약서는 추후 평가결과 보고서에 첨부
  - ※ [붙임 2] 보안서약서 양식
- 단, 평가위원 수가 매우 많은 경우 등 서면으로 된 서약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**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서약 징구** 가능

### 평가과정

#### ○ 보안관리

- **평가과정 전반**에 평가위원 및 사업담당자의 **외부 접촉을 차단**하여 정보유출을 방지
- 패널/유형별 **평가 장소분리 · 합숙평가** 등으로 평가장 보안 유지

- 집결장소 집결 후 단체로 평가장 이동(평가관리자 동반), 개별 행동 제한 및 타 패널간 정보교류 사전 방지
- 평가총괄위원장의 수시 점검 및 각 패널위원장과의 평가회의 정례화
- 개인 휴대전화 수거 및 본부진행요원 입회하에 긴급통화만 가능, 평가용 전산장비의 외부저장장치 및 인터넷 접근 불가 조치, 평가용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 확인완료 후 일괄 파쇄
- 기타 평가과정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·활용 가능

#### 0기타

- 발표 ·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은 패널당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, 타이머 설치 및 평가장 간사의 **시간통제 엄수**
- 평가에 참여한 **평가위원의 이해관계**가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**해당 패널 평가에 서 배제**하되, 패널의 남은 평가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**해당학교만 평가배제** 등의 조치 가능
- 단, 사업담당자에게 이해관계를 사전고지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 후 해당 **평가점수 무효화 조치**

#### 결과확정

#### ○ 선정기준

- 선정평가가 종료되면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관리위원회에서 **최종 심의**를 거친 뒤 지원대학 및 사업단 **선정**
- 기본계획 및 평가계획에 의거한 선정규모에 따라 선정결과를 확정하되. 패널별 ·

유형별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패널 · 유형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**사전에** 선정기준을 안내

#### ○ 부정 · 비리 대학 수혜제한

- **감사처분 및 행정처분** 등에 따라 **중대한 부정 · 비리**가 확인된 대학은 부정 · 비리의 정도에 따른 **사업비 삭감 등의 수혜제한 가능**
- 본 매뉴얼의 대학재정지원사업 **부정·비리 대학 수혜제한기준**에 따라 부정·비리 대학에 대한 **재정수혜를 제한**하되,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사업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조정 가능
- ※ [붙임 4] 부정 · 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(안)

#### ○ 지원금 산정

- 기본계획 또는 평가계획 수립 시 **사업비 배분방식** 및 **재정지원사업 지원액 산정원칙**을 마련하여 **사전 공개**해야 하며, 필요시 선정 이후에 세부기준을 구체화 가능
- 선정 이후 사업비를 결정하는 경우 **사전에 유형별 재원배분**을 예정하여 **공개**하고, 추후 사전 재원배분과 가급적 합치하도록 사업비 교부

#### 준수사항

#### ○ 사업담당자 준수사항

- 모든 평가과정에서 **절대 직접적·간접적(제3자) 청탁\***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**안 되며**, 기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가능

#### ◈ 부정청탁 예시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적용)

- **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이 선정 또는 탈락**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특정 대학이나 사업단에 대한 **지원액 산정 또는 제재여부 등에 개입**하거나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공식적 결과발표 전에 **평가결과**를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- **평가점수를 처리/조작**하도록 하는 행위
- 기타 사업담당자의 지위 ·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- 평가기간에 근무지 외부에서 대학관계자와의 면담은 최대한 자제하고,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상급자에게 면담계획을 보고한 뒤 외부면담 기록을 작성하여 차기 평가시까지 보관
  - ※ [붙임 3] 외부면담 기록서(양식)

#### ○ 사업신청기관(대학) 관계자 준수사항

- 특정 대학 및 사업단의 특혜를 위해 직접적·간접적(제3자)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가능

## 07 결과발표

### 선정결과 발표

#### ○ (공개적) 결과발표

-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**위탁기관 또는 사업단 홈페이지, 언론매체** 등을 통해 **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전체 명단** 등을 **공개적**으로 발표

#### ○ (개별적) 결과안내

- 사업신청기관(대학)이 요청시 **평가의견 및 평가결과를 사업신청기관(대학)**에게 **개별적으로 안내**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
- 개별 안내 시 **영역별 평균점수**, 해당 대학·사업단의 **영역별 종합점수, 평가의견** 등에 대해 안내 가능
-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안내항목 조정 가능

#### 이의신청

#### ○ 이의신청 접수

- 교육부 또는 위탁기관은 **선정결과를 발표한 뒤**, 평가결과에 대한 **이의신청 제도**를 운영 가능
- 이의신청 절차

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서 검토 이의신청 결과 통보 (사업신청기관, 7일 이내) □ (위탁기관/필요시 제3자, 30일 이내) □ (위탁기관, 즉시)

- 사업신청기관(대학)이 평가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**소명 기회**를 부여해 평가의 **공정성과 투명성** 제고
- 기본계획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업신청기관(대학)은 결과발표 **7일 이내**에 **위탁기관에** 이의신청서를 제출

#### ○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통보

- 위탁기관은 **최대 30일 이내**에 이의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**수용 또는 반려여부 결정**하고. 필요시 **1회**에 한하여 **검토기간 연장 가능**
-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외 **객관적**인 **제3자**의 **검토**를 추진할 수 있으며, 검토위원 수 및 자격 등은 사업별로 결정
- **재평가**가 **필요**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사업신청기관(대학)에 통보하고, **재평가 절차** 및 **방법**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**사업별**로 결정
- **재평가**가 **불필요**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**검토결과**를 사업신청기관(대학)에 즉시 통보

#### 사업협약 및 계획서보완

#### ○ 사업협약 및 변경

- 위탁기관은 선정이 확정된 대학 및 사업단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되, 선정 후에 현장점검 실시 등 필요시 협약시점 연기 가능
-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 · 단계 · 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**필요시 협약 내용을 변경 가능**

#### ○ 사업계획서 보완

- 사업계획과 관련한 **변동사항**이 생긴 대학 또는 조건부로 선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**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청** 병행

## 08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

#### 성과관리

- O 사업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**신청서 사실** 여부, **의무사항** 이행여부, **사업비 집행실적** 등 **현장점검** 실시할 수 있음
- O 사업의 효율화 및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대학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,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\*을 실시할 수 있음
  - \* 선정/중간평가와 컨설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설팅단에 사업계획서 및 과거 평 가의견 등의 자료를 제공
- O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실적을 **사업 실적평가에 반영 가능**
- O 허위·오류자료 제출,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학 및 사업 단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 해지 시 사업비 환수 가능

## 중간 · 연차 · 단계평가

- O 신규사업 선정 이후 대학의 사업추진성과, 사업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해 **중간 · 연차 · 단계평가**를 실시 가능
- O 중간 · 연차 · 단계평가는 평가공고, 평가방법, 결과안내 등에 대해서 선정평가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,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가능

#### ○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- 선정 대학 중 사업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**우수사례 및 성과**를 발굴하여 워크숍 · 심포지엄 등을 통해 **대학 간 공유 및 확산** 

## 09 행정사항

## 시행일

O 본 매뉴얼은 2016년 2월 1일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함

## 적용대상

- O (신규사업) PRIME, CORE,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이미 기본계획이 발표된 신규사업은 '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'부터 적용
- O (적용예외)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)은 차기사업부터 본 매뉴얼의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을 적용함

## 대학재정지원사업 담당자 신청기관 대상 청렴교육 내용(안)

#### 1. 교육목적

- O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운영 · 관리를 도모
- O 사업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교육을 실시 하여 사업추진 상 부정행위를 사전예방

#### 2. 참여자

O 강의자: 외부 전문가 또는 동영상 교육 대체 가능

O 수강자: 대학관계자 및 설명회 참석자 일동

#### 3. 교육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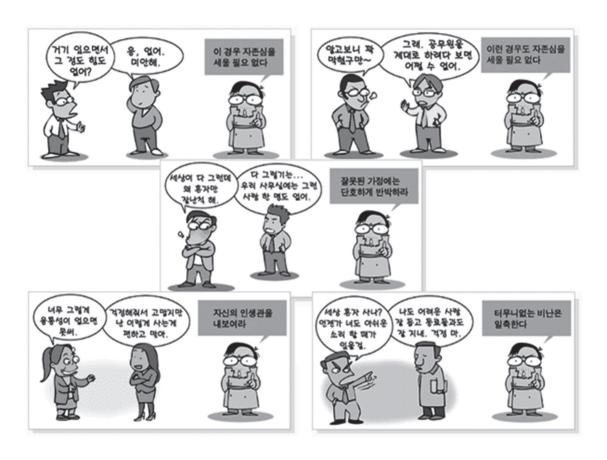
#### ○ 공직자 청렴가이드(청탁뇌물대처법)

가.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!

청탁자	답변 요령
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	응.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
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	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
오늘 저녁 시간 있어?	선약이 있어(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)
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	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
식사나 한 번 하자 (거절이 불가능한 경우)	사무실 앞으로 와. 우리 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.
	●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.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.
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	●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.
	● 그런 전화하면 그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.

#### 나.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!

- 다음과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.



#### -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다면?



## 제1단계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.

-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,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 둔다. 왜냐하면,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,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.
-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.

## **제2단계** 뇌물을 **거절**한다.

-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.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.
-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(예를 들어,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) 이러한 경우,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.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## 제3단계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.

●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,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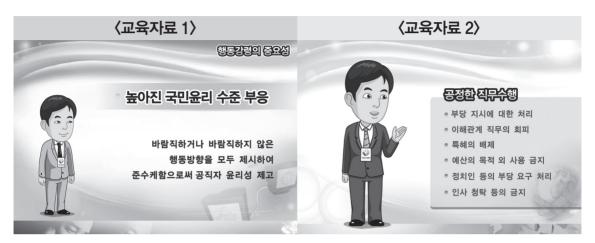
## 제4단계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.

-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.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.
-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,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협의를 없앨 것이다.
-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.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・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〈출처: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〉

#### ○ 공무원 행동강령

#### - 공무원 행동강령 **교육 동영상 자료**



〈출처: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〉

#### - **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**(제137호) 주요내용

공정한 직무수행	-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(제4조) -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(제5조) - 이해관계 기관에의 고용휴직 제한 등(제5의2조) - 특혜의 배제(제6조) -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(제8조)
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	<ul> <li>이권 개입 등의 금지(제10조)</li> <li>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(제11조)</li> <li>알선 · 청탁 등의 금지(제12조)</li> <li>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(제13조)</li> <li>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(제15조)</li> <li>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(제16조)</li> </ul>
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	<ul><li>- 외부강의 · 회의등의 신고(제17조)</li><li>- 금전의 차용 금지 등(제18조)</li><li>-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(제19조)</li></ul>

#### O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16.9.28 시행예정)

- **부정청탁금지** 및 **금품수수금지** 대상행위 및 제재기준

유형	위반행위	제재수준
	●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제재 없음
	●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1천만원 이하 과태료
부정 청탁	●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공직자 제외)	2천만원 이하 과태료
금지	●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	3천만원 이하 과태료
	●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 수수 금지	●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-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-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	●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-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-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수수금액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
	●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	500만원 이하 과태료

<sup>※</sup>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안내 자료 (PPT) 참고

### 서 약 서

(담당자용)

본인은 20OO년도 OOOO사업 담당자(관리자)로서,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#### 1. 기밀유지

OOOO사업 선정/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.

#### 2. 금품수수 금지

사업신청기관(대학)이나 기타 관계자로부터 사업선정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 일체를 수수하지 않는다.

#### 3. 공정성 확보

평가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 및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,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2000. OO. OO.

담당자(관리자) ○ ○ ○ (서 명)

## 0000사업 외부면담 기록서 (예시)

■ 사업명 :

■ 담당자 :

■ 소속부서:

■ 외부면담기록

날짜/시간	면담자 (성명, 소속 및 직위)	면담 장소	면담내용	비고 (동반자 등)
'15.9.27 오후 3시	홍길동 한국대 입학처장	세종시 어진동	0000사업 중간평가 일정 문의	01 <u>0</u> b) <u>=</u>

### 부정 · 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

#### ■ 목 적

- O **부정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,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**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
- O 부정 · 비리 대학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

#### ■ 기본절차

(교육부) 부정 · 비리 대상 취합 및 위탁기관 전달 (위탁기관) 부정 · 비리 유형 및 정도를 분류 \* 필요시 검토위원회 구성 가능

(위탁기관) 부정 · 비리 검토 대상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

(사업관리위원회) 부정 · 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결정 (교육부 및 위탁기관)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혜제한 조치

- O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·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취합하여 위탁기관에 전달
- O 위탁기관은 전달받은 학교별로 부정·비리의 유형 및 정도를 분류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분류의 적절성 검토 가능
- 위탁기관은 검토대상이 되는 부정 · 비리 대학의 전체 명단 및 내용을 **사업관리위원회** 심의 안건으로 상정
- O 사업관리위원회는 **심의를 통해 부정 · 비리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을 결정**하고, 교육부 및 위탁기관은 이에 따른 **수혜제한 조치 실시**

#### ■ 기본방향

- (부정·비리 대상) 감사·행정처분 및 형사판결
  - 감사원,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**감사**에서 부정 · 비리로 **처분한 사항,** 행정처분위원 회에 의한 **행정처분** 및 형사법원에 의한 **판결**

#### 적용대상

- (부정·비리주체)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
  - (조직적 비리) 총장·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. 기관 차원의 관리·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
  - (개인적 비리) 개인적인 유용 · 횡령 · 배임 (ex.연구비 횡령 등)
- (부정·비리유형) 법인회계, 인사·복무, 교비회계, 입시·학사, 연구비·산단, 기자재·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·비리에 재정수혜를 제한함으로써 대학전반의 교육수준 개선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
  -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거나 사업 수행 여건 · 역량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, 그 외의 부정 · 비리에 대해서는 본 기준 적용
- (부정·비리정도)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중심으로 검토
- O (제한방법) 대학별 부정 · 비리 정도에 따라 차등 조치하되, 신규선정대학은 평가시 감점, 계속지원대학은 사업비 감액 등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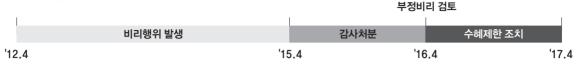
〈부정·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〉

구분	1단계	2단계
부정·비리	▲ 청미파경하지 저	● 감사 · 행정처분 확정 시
인지상태	● 형사판결 확정 전	● 형사판결 확정 시
	● 제한방법 : <b>사업비 지원유예</b> (선정전)	● 제한방법 : <b>평가시 감점</b> (선정전)
재정사업	<b>사업비 집행·지급정지</b> (선정후)	<b>지원액 삭감</b> (선정후)
수혜제한	● 반영기간 : 원칙적 1년	● 반영기간 : 원칙적 1년
	● 제한기간 : 혐의확정시까지	● 제한기간 : 원칙적 1년

O (반영기간) 감사·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·반영하되,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

O (제한기간)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때로부터 1년 동안 수혜를 제한하되, 필요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기간 연장 가능

※ 반영기간 및 제한기간 예시



O (심의시점) 사업별로 평가시점, 협약시점, 과거 부정비리 대학 검토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심의 · 결정시점은 조정 가능

#### ■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에 의한 수혜제한

#### ① 감사처분

- O (적용범위) 감사원,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모든 감사(개인·특정목적 관련 사안감사, 종합감사 등) 대상
- ※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등 참고상황을 함께 사업관리 위원회에 상정 가능
- (처분대상자) 전 · 현직 이사(장), 총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

〈국립·사립대학의 감사처분 대상기준〉

국립대학	사립대학	
● 총장 • 조요보지되	● 이사(장), 총장	
<ul> <li>주요보직자</li> <li>- 국립학교 설치령 9조1항에 규정된 자(처/국장 등)</li> <li>및 5조의2(부총장)</li> </ul>	● <b>주요보직자</b> - 학교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된 주요보직자 (부총장, 처/실/본부장 등)	
<ul> <li>산학협력부서의 장         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       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)</li> </ul>	- <b>산학협력부서의 장</b> 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)	

#### O (처분내용) 중징계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및 별도조치를 중심으로 검토

※ 단, 동일인에게 병합되지 않은 다수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, 동일한 사건으로 다수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중 최고보직자(주요보직자 이상)에 대한 처분을 기준으로 함

O (적용방법) 감사처분의 대상 및 정도에 따라 대학별 부정 · 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 제한 수준을 결정

#### ② 행정처분

O (적용대상)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[별표4]에 따라 2차 위반처분을 받은 대학

• 행정처분 수준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및 별표 4

- 1차 위반: 모집정지, 입학정원 동결, 정원감축 예고

- 2차 위반 : **정원감축, 해당 학과 및 전공 폐지** 

O (적용방법) 대학별 2차 위반처분 횟수에 따라 부정 · 비리 정도를 판단

#### ③ 부정 · 비리 정도

O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 · 행정처분에 따른 부정 · 비리 정도 판단

〈감사·행정처분에 따른 부정·비리 정도〉

부정 · 비리 정도	감사처분 및 행정처분
유형	● 이사(장)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(임원취임승인취소, 파면, 해임)이 있는 경우 ● 동일한 사유(건)으로 행정처분(2차 위반)을 2회 이상 받은 대학
유형	<ul> <li>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(파면, 해임)이 있는 경우</li> <li>행정처분(2차 위반)을 1회 이상 받은 대학</li> </ul>
유형	<ul> <li>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(강등, 정직)이 있는 경우</li> <li>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(고발, 수사의뢰)가 있는 경우</li> </ul>

<sup>※</sup> 상기 기준이외에 경징계(감봉, 견책) 등의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 · 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

#### ④ 수혜제한

O (제한방법)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부정 · 비리 정도에 따른 제한수준 결정

〈부정 · 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수준〉

HTJ UIT	신규·	선정*	계속지원	
부정 · 비리	대학(기관)단위	사업단(팀)단위	대학(기관)단위	사업단(팀)단위
정도	지원 사업	지원 사업	지원 사업	지원 사업**
유형	총점	총점	총 사업비	총 사업비
	2%초과~5%이하	1%초과~2%이하	10%초과~30%이하	4%초과~10%이하
유형	총점	총점	총 사업비	총 사업비
	0.5%초과~2%이하	0.2%초과~1%이하	5%초과~10%이하	2%초과~4%이하
유형 🏻	총점 0.5% 이내	총점 0.2% 이내	총 사업비 5% 이내	총 사업비 2% 이내

<sup>\*</sup> 별도의 선정절차를 통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

- ※ 단,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
- **(신규선정) 선정평가시** 부정 · 비리 대학에 대해 **감점 조치**
- (계속지원) 사업비 감액하되, 감액한 사업비는 우수 대학(사업단)에 배분 등 가능

#### ■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제한

#### ① 적용대상

- O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(감사처분대상자와 동일)가 부정 ·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되어 대학내외에 부정적 영향이 큰 문제로 판단되는 사안으로,
  - 업무상 배임 · 횡령, 직권남용, 뇌물수수 · 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 · 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

<sup>\*\*</sup>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제한비율 범위 내에서 본부로 지원되는 예산(간접비 등)과 사업단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하여 적용가능

#### ② 형사판결 확정 전

- O (제한방법) 검찰 수사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·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**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\*, 사업비 지원** 유예 등 가능
  - \*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또는 지급정지 중 선택적 조치
- O (제한기간) 감사·행정처분 발생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부정·비리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

#### ③ 형사판결 확정 후

- O (제한방법)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\*이 확정된 경우 부정 · 비리 정도를 '유형 l'로 보아 수혜제한하되, 부정 · 비리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심의를 통해 가중감경 가능
  - \* 형법 제41조(형의 종류): 사형, 징역(집행유예 포함), 금고, 자격상실, 자격 정지, 벌금, 구류, 과료, 몰수
- ※ 사형, 징역, 금고 이외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부정 · 비리 정도를 판단하여 수혜제한 가능
  -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·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, 감사·행정처분에 의해 부정비리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감사·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수혜제한 가능
  - 단,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시점에 감사·행정처분과 형사판결이 **모두 확정된 경우** 부정비리 정도가 **중한 것을 기준**으로 판단